

조교임용규정

제정 : 1996.03.01 개정 : 2021.03.01
개정 : 1998.05.01 개정 : 2021.12.01
개정 : 1999.10.18 개정 : 2023.10.16
개정 : 2001.09.01 개정 : 2025.03.01
개정 : 2002.03.01
개정 : 2008.03.01
개정 : 2008.12.17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20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에 의거하여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칭한다) 조교의 임용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05.01.,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1.03.01., 2021.12.01.>

제2조(조교의 정의) “조교”라 함은 학과 및 행정부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강의 및 실험·실습 등을 준비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에 기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자격요건) 조교의 자격요건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제4조(임용) 조교는 학부(과)장의 추천이나 관련 부서장의 추천 또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교무처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25.03.01.>

제5조(임용기간)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경과 후 1차례 한하여 1년 범위 이내에 재임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6조(조교의 직무) 조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03.01.>

1. 강의 자료준비 및 학생들의 학습지도
2. 실험실습 지도 및 보조
3. 실험실습 기자재 보관 및 관리
4. 교수의 연구 및 실습 보조
5. 기타 학과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명하는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업무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신문보장) ① 조교는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교직원과 동등한 신분을 보유한다.

② 조교는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 과 본 대학교 「직원 인사규정」 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5.03.01.>

제8조(근무부서) 조교는 임용 당시 지정하는 학과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책임) ① 조교는 해당학과(부서)에서 근무함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조교는 원칙적으로 총장의 지시하에 해당학과(부서)의 실험·실습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직원 상호 간 원활한 업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0조(임금) 본 대학교 「교직원보수 규정」 에 의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11조(재계약 등) 조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2조(휴직·면직) 조교는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으며 제9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면직된다.

제13조(조교의 관리) ① 조교는 학부(과) 또는 행정부서에 소속되고 조교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, 2025.03.01.>

② 개별 실험실습에 관한 학습준비 사항 및 근무위치에 대하여는 부서장 및 해당 학과장의 지시를 받는다. <개정 2008.03.01.>

제14조(임용구비서류) 조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1. 조교임용지원서 1부 <개정 2014.11.01.>
2. 자기소개서 1부 <개정 2014.11.01.>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개정 2014.11.01.>
4.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1부
5. 주민등록초본 1부 <개정 2025.03.01.>
6. 자격증사본(소지자에 한함) 각1부.
7.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<개정 2021.03.01.>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 「직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